

#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95
----------	------------

2020년 6월 18일  
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,
- 설치하고자 하는 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본부 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골자

-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(안 제4조).
-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자문위원회 설치를 삭제함(안 제5조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”를 “수립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안 제4조 제3항에 신설하여

“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
2.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
3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를 삭제한다.

## 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수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</u></p> <p><u>2.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</u></p> <p><u>3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

##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, 가치의 계승·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항일독립운동”이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일제의 민족차별, 국권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.
2. “항일독립운동 유적”이란 서울특별시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2.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
4. 계획에 따른 자원 조달 및 운용

5.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

2.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선정기준 수립

3.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에 대한 평가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(사업의 추진)**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·연구

2.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

3.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

4.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**제6조(위탁)**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예산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, 자치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